

제180회 구의회 임시회

2014. 2.5 ~ 2.12

교육·복지·사람 중심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위 생 과

보고 순서

I . 일 반 현 황	•••	1
II . 2014 주요업무 계획	•••	3
III . 신규·주요 투자사업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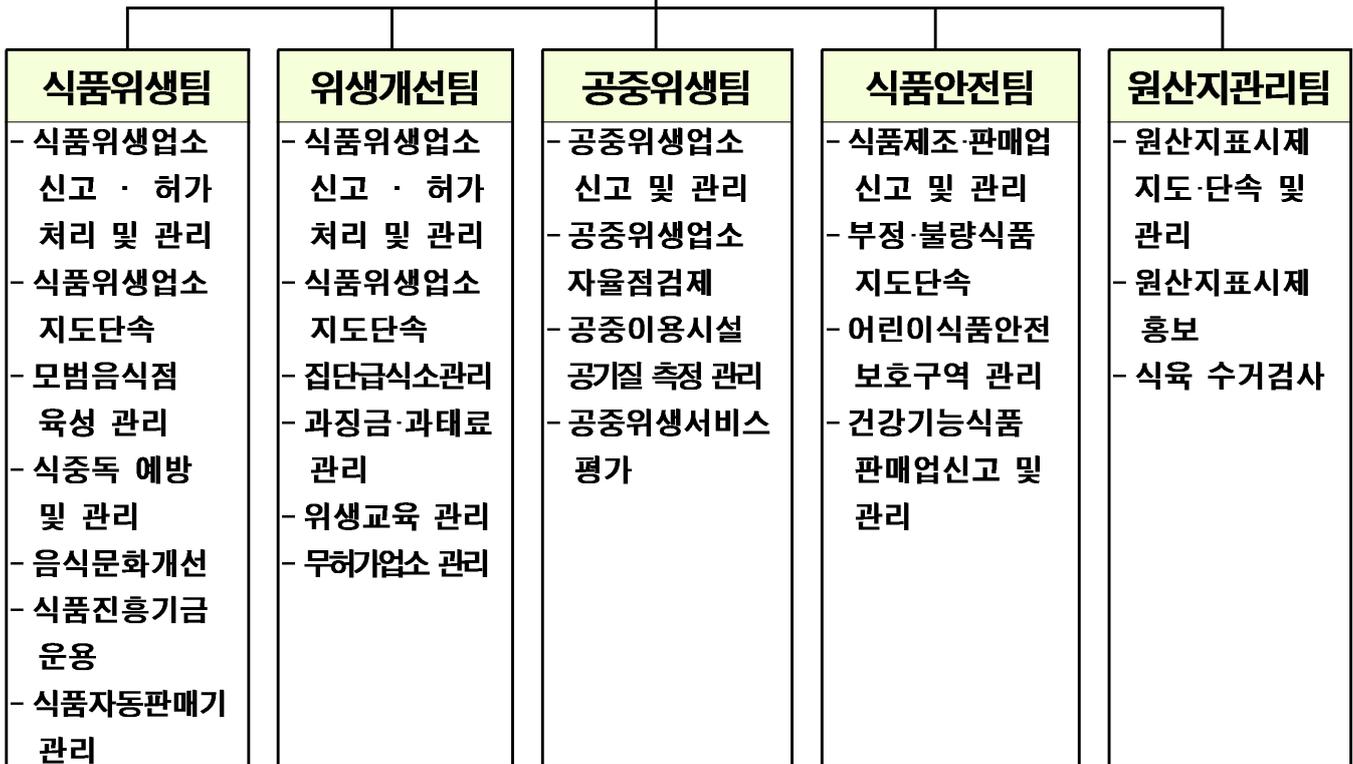
I. 일반 현황

1

조직

위생과

- (5)개팀



2

인력

구분	계	일반직(임기제 포함)						대체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3		1	5	5	6	6	
현원	22		1	8	8	4	1	
과부족	△1		-	3	3	△2	△5	

3

주요시설 및 장비

□ 주요장비

구분	명칭	현황	비고
위생점검 주요장비 (9종60대)	차량	마티즈(2005년식)	2005.1월 구입
	갤럭시탭	13대	2011.10월 식품의약안전청 지원
	식품 등 유해물질 측정기	3대	2012.5월 인센티브사업비 지출
	손씻기 뷰박스	20대	식중독예방 손씻기 장비
	ATP측정기	4대	식품 위생점검 장비
	적외선·디지털 온도계	14대	
	미생물 배양기	1대	
	차량용 냉장고	2대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	미세먼지 측정

4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총계		1,687,862	1,644,784	43,078
구비	소계	195,622	198,302	△2,68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60,911	61,876	△965
	기본경비(위생과)	134,711	136,426	△1,715
기금	소계	1,492,240	1,446,482	45,758
	식품진흥기금 운영	503,830	474,427	29,403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988,410	972,055	16,355

Ⅱ . 2014 주요업무 계획

연 번	사 업 명	쪽
①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4
②	우수음식점 육성 관리	5
③	식중독 예방활동	7
④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9
⑤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 관리강화	11
⑥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13
⑦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7
⑧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	19
⑨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21
⑩	공중위생업소 수거검사	22
⑪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2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등 저금리로 자금을 용자해줌으로써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결한 구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규 모 : 6개소 300,000천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개소 150,000천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3개소 150,000천원

□ 추진방향

-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식품접객업소 청결한 시설개선으로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용자방법: 위생과에서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은행에 통보하면 담보확보 후 대출처리
- 용자대상 및 조건

용자종류	용자대상	한도액	이율	용자기간 및 상환
시설개선 자 금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위탁 급식 영업자	1억원	연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2천만원	연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연2%	2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용자금 지원 홍보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홍보 및 안내문 배부
 - 행복소식지 및 보건소식지 분기별 홍보, 구·부서 홈페이지 홍보
 - 민원실 창구 연계 상담(수시)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구 기금 100%

모범음식점의 내실화와 위생등급 우수음식점을 집중 육성하여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위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목표 : 220개소
- 모범업소 신규 지정 : 연2회(6월, 11월)
- 모범업소 정기 재지정 심사 : 연1회(10월)
- 모범업소 수시 재지정 심사 (연중)

□ 추진방향

- 모범음식점 지정 내실화로 음식문화 향상
- 위생등급 우수업소 집중 육성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
-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우수업소 육성

□ 추진계획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현황 및 목표 : 212개소 (목표: 220개소,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업 태 별							면 적 별(m ²)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뷔페	기타	계	80미만	80~99	100~199	200~299	300이상
212	133	20	35	10	6	8	212	15	22	88	31	56

-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 연2회 (6월, 11월)
- 모범음식점 정기(수시) 재지정 심사
 - 정기 : 10월(매년), (단, 1년 이내 수시 재지정 또는 위생등급 평가업소 제외)
 - 수시 : 지위승계, 주취급 음식 변경, 소재지 변경한 업소
- 모범음식점 운영 지원
 - 육성자금 융자 : 3개소 150백만원 (업소당 50백만원 이내, 연2% 이율)
 - 표지판 제작 지원 : 업소당 88천원 (20개소)
- 모범음식점 홍보 : 6회 이상
 - 전국시군구, 구 홈페이지, 소식지, 책자 제작 등

○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 현황 및 목표 : 255개소 (목표 : 평가업소 중 A등급이상 75% 이상)

연도	구 분	신청업소 합 계	평 가 결 과			
			AAA등급	AA등급	A등급	등급외
2011	서울시 전체	3,372	272(8%)	698(21%)	988(29%)	1,414(42%)
	영등포구	227	19(8%)	41(18%)	79(35%)	88(39%)
2012	서울시 전체	4,116	772(19%)	1,275(31%)	1,046(25%)	1,023(25%)
	영등포구	239	74(31%)	75(32%)	46(19%)	44(18%)
2013	서울시 전체	4,000	위생등급 평가 진행 중(11월 중순 결과 예정)			
	영등포구	251				

- 기 간 : 2014년 2월 ~ 11월
- 평가대상 : 일반음식점 6,198개소 중 255개소 이내(신규 및 재평가 포함)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업, 각종 인증업소, 자치구 선정업소 등
- 방 법 : 서울시에서 식품위생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위생등급 평가
- 평가기준 : 4개 분야 40개 항목 100점 기준

등 급	점수기준	비 고
AAA등급	90점 이상	
AA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A등급	70점 이상 ~ 80점 미만	
등급 외	70점 미만	

- 지 원 : 위생등급 표지판 지원 및 우수업소 명단 공개·홍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 기 간 : 연중
- 규 모 : 3개소 150백만원
- 융자대상 및 조건

연번	용 자 대 상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
1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위탁급식소 영업자	1억원	연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방법 : 융자대상자 선정(위생과), 담보확보 후 대출(우리은행)

○ 영등포 대표음식점 선정 : 「맛있는 영등포 Tastreet」

- 기 간 : 2014. 12월
- 대 상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평가결과 우수음식점
- 홍보지원 : 전국사군구, 구 홈페이지(문화관광), 책자 및 e-전자북 제작 등

□ 소요예산 : 21,760천원 - 구 기금 100%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식품이 위해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정착

□ 사업개요

- 기간 : 연중
- 대상 : 음식점, 집단급식소 및 5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식중독 취약시설
- 주요추진사항
 -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 년 2회 실시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 하절기(5월 ~ 9월)
 - 음식점업주, 급식소관리자 및 공무원 등
 -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 학교, 어린이집 및 각종 행사시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추진방향

- 식중독발생 제로를 위한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 식중독예방의 교육 및 홍보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 추진계획

-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 기 간 : 집단급식소 (3월, 9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4월, 10월)
 - 대 상 : 346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집 단 급 식 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소 계	학 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기타	
346	277	43	25	66	9	134	69

- 점 검 반 : 민·관 합동점검 실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식자재 관리, 배급식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기 간 : 2014. 5. 1 ~ 9. 30 (5개월간)

- 대 상 : 일반음식점, 50인 미만 급식시설, 공무원 등 3,525명

- 발송기준 : 식중독지수가 70~95인 경고단계 이상

- 내 용

- 예시 : “식중독지수00[위험]음식물0~0시간 내 부패우려, 식중독예방에 특별주의”

○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강화 2개소→20개소>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상설 체험관 : 20개소(보건소 2층, 글로벌다문화센터, 동주민센터)
- 이동 체험관 : 100개소(학교, 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이동체험관)

○ 식중독 예방 홍보 다양화

- 기 간 : 연 중

- 방 법

- 구민대상 홍보 및 체험실시 : 영등포아카데미 등 구민 교육 및 행사시 병행
- 캠페인 실시 : 연 2회(식품접객업 영업주, 음식점협회, 관련 공무원 등 200명)
- 대중매체 홍보 : 디지털 홍보관, 구·보건소복지 및 홈페이지, 지역언론, 지역방송 등

□ 소요예산 : 47,230천원 - 구 기금 100%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위반으로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증가되어 계절·테마별 특성화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 올바른 위생질서 확립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8,164개소
- 주요추진사항
 - 계절 · 테마별 기획 지도점검
 - 퇴·변태업소(카페형 일반음식점) 집중점검

□ 추진방향

- 2013년도 미점검업소 우선 점검 후 2014년도 대상업소 순차적 점검으로 공정성 확보
- 민·관 합동 및 실질적 점검 확행으로 온정적 · 형식적 점검형태 불식 및 신뢰성 확보
- 청소년 유해가능업소 및 불법 행위 유발업소 집중감시

□ 추진계획

○ 계절 · 테마별 기획 지도점검

- 기 간 : 연 중(수시)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8,164개소 (단위:개소)

계	일반음식점	유홍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8,164	6,221	198	293	1,212	135	105

*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휴게음식점(다방)

- 점검방법 : 단속반 운영, 1개반 5명(공무원 3명, 시민단체 2명)
- 점검유형 : 자치구 교차합동점검, 특별기획점검, 야간단속(주2회) 등

- 점검내용
 -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유해업소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 일반(휴게)음식점의 유흥접객 고용 및 유흥시설설치 영업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업종별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
- 퇴·변태업소(까페형 일반음식점) 집중점검 연4회(분기별1회)
 - 기 간 : 2014. 3 ~ 12월 [야간단속 시 병행점검]
 - 대 상 : 당산동1가 소재 까페형 일반음식점 60개소
 - 점 검 반 : 4인1조 5개반(영등포경찰서 합동점검)
 - 주요내용 : 유흥접객행위 및 퇴폐·변태행위,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 소요예산 : 19,936천원 - 구비 65%, 구기금 35%

식품접객업소 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위생지도서비스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운영 : 1,350개소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 2,327개소
- 주요추진사항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66㎡미만인 업소 위생지도서비스
 - 일반음식점100㎡이상(703개소),휴게음식점(1,212개소), 제과점(135개소), 집단급식소(277개소)는 인터넷 자율점검실시

□ 추진방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맞춤형 방문지도서비스로 영업주 부담 완화 및 영업자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위생점검 마인드 고취
- “인터넷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로 참여분위기 조성 및 수요자 만족체감도 제고
- 『1업소 1년 1회지도·점검』 확행으로 중복점검 및 미점검 업소 해소

□ 추진계획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운영
 - 기 간 : 2014. 3 ~ 11월
 - 대 상 : 1,350개소(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66㎡ 미만 업소)
 - 점 검 반 : 2인1조 3개반(서울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내용 : 위생분야전반, 원산지표시, 잔반재사용, 각종 홍보사항 안내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시정여부 확인 점검 : 자체 시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 미시정 업소 :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 행정처분 조치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

- 기간 : 2014. 1월 ~ 12월(연 4회)

- 대상 : 2,327개소 (단위:개소)

계	일반음식점 (1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
2,327	703	1,212	135	277

- 세부내용

- 영업자가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접속 후 자율점검포에 의거 입력 제출
- 자율점검 미이행업소 현장지도점검 및 4번 연속참여업소 출입점검 면제 혜택
- 출입점검 면제기간 중 행정처분 적발시에는 점검면제 취소

□ 소요예산 : 4,000천원- 구 기금 100%

정부 4대약 근절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한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 유통식품 위해물질 안전성 검사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

□ 추진방향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
-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과자류	빵/떡류	두부류	식용유지	커피	음료	면류	건포류 등 기타식품
115	18	21	4	4	12	4	4	48

- 점검시기 : 연 중(명절 성수기, 하절기 등 특별점검)

- 총 점검대상 : 145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점검 : 115개소
- 설 ·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특별점검(한과, 떡류 등) : 20개소
-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음료류, 빙과류 등) : 5개소
- 행락철 성수식품 제조업소(도시락 등) : 5개소

- 점검내용 : 무신고·무허가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표시기준 준수, 위생 상태 등

- 점검방법

-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합동점검반(2인 1조) 편성
- 전년도 위반업소 중점 점검
- 점검 사전예고제로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기술지도**

※ HACCP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 추진배경

- 관내 HACCP 지정 및 지정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연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

- 기간 : '14. 4. ~ 11월(10개월 간)

- 대상 : 3개소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HACCP 지정 여부	비고
롯데제과(주)	양평동4가 20	빙과류, 과자류 등	지정	
(주)정성푸드원	양평동5가 131-1	농산물가공품	지정	
(주)맛플러스	대림동 739	빙과류	신규지정대상	

- 추진방법

- 식품안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탁운영
- 제조업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 법령 준수사항, 시설 및 관리 운영상태 등 업소별 종합진단
- 위해요소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업소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보급

○ **유통식품 위해물질 안전성 검사**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제조·판매업소

(단위: 개소)

합계	식품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학교주변 소규모판매업소
476	115	2	30	20	309

- 중점 수거품목(수거목표 600건 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시민다소비식품

- 수입식품, 과자류,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
- 수거방법 : 유상수거
- 검사의뢰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식품규격기준, 식중독균 등 제품별 기준에 따른 검사
- 검사결과조치 : 부적합제품 압류·회수·폐기처분 및 제조업소 행정처분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신규>**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전통시장 3개소 선정

시장명	합계	즉석판매제조	식품접객업	식품판매 (자유업)	비고
합 계	87	62	25	28	
영등포전통시장	44	28	16	21	
대림중앙시장	18	14	4	3	
우리시장	25	20	5	4	

- 지도·점검 등 관리방법
 - 전담공무원(1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 지정 운영
 - 분기 1회 이상 자율적 위생관리 유도 및 지도·계몽 활동 실시
 - 전통시장 위생관리매뉴얼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위생마스크 등 위생물품 지원
 -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영업주의 위생향상 자율 추진 유도

○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 추진배경 : 식품판매업체의 경쟁 심화로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경품·공연을 미끼로 하는 “뺏다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기간 : 2014. 3월 ~ 11월
- 추진방법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공무원(1명) 및 시니어감시단(5명) 전담 지정 운영
 - 시니어감시단 활동 방법 자체 교육 및 홍보자료(리플렛 등) 제작 배포
 - 인터넷쇼핑몰, 신문, 잡지, “뺏다방”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활동
 - 위반내용, 안전성 유무, 소비자 구매시 유의사항 등 홍보 병행
- 위반업체 조치 : 허위·과대광고 증거 확인 후 고발 및 행정처분

○ 수입식품 유통관리<강화 : 밀반입 수입식품 단속강화>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 등 수입판매업 613개소 및 식품판매업소
- 점검방법 : 점검반(공무원, 소비자감시원)활용 불시 점검
 - 민원 신고업소,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우선 점검
- 중점점검사항
 - 한글 표시사항 등 식품표시기준 적정여부 집중 점검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 가공식품 유통·판매 여부
 - 외국인 밀집지역 등 수입식품이 많은 유통·판매업소 점검
 - 수입식품의 용도(통관된 제품으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 유통관리 대상 식품) 외 사용·판매 여부
 - 의심제품 수거검사 병행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부적합 제품 조치 : 압류·회수·폐기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

○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 기간 : 2014. 4월 ~ 9월
- 대상 : 식품판매업소 2,764개소

합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2,764	582	124	1,445	613

- 자율점검 방법
 - 1차 : 업종별 자율점검포 발송(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
 - 2차 :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현장점검(공무원, 소비자감시원)
 - 3차 :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자율점검내용 :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식품판매업 업종 구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소요예산 : 12,360천원 - 구비 72.8%, 구기금 27.2%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 강화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근절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

□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43개교 43개 구역(초등학교 23, 중학교 11, 고등학교 9)
 - ※ 학교주변 200m구역 내 주 통학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
 - 내 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표지판 관리
 - 설치 개수 : 127개
 - 방 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 월 1회 이상 점검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지정·운영
 - 지 정 : 학교장의 추천 및 본인 참여의사 확인 후 지정
 - 임 기 : 2년
 - 43개교 그린푸드존별 책임 구역제 지정·운영

- 운 영 : 142명(초·중·고 학교별 3~4인)
 - 활동방법 : 2인 1조 편성 운영
 - 활동주기 : 월 1회 이상
 - 역량강화 : 연 1회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활동 시)

○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 지도·점검
 - 점검기간 : 연중(월 1회 이상)
 - 점검대상 :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86개소
 - 점검방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용 점검(2인 1조 운영)
 - 점검내용
 -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표시기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등
- 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
 - 기 간 : 연중
 - 지정현황 : 총 51개소
 - 지정대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 지원 및 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홍보 및 지도·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기 간 : 2014. 4월 ~ 12월(기간 중 7개월 - 방학 등 제외)
- 대 상 : 초·중학교 중 1개소(초등학교는 5~6학년 이상)
- 방 법 : 학교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등 자율 활동시간 활용
- 활동내용 : 식품안전 관련 일반학습, 교내 실습·체험, 교외 현장활동 등

□ **소요예산 : 35,820천원** - 국비 5.8%, 시비 17.4%, 구기금76.8%

수입 농수축산물의 증가 및 식품안전도에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지도점검 및 홍보계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 3,507개소
-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 45건
-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40회

□ **추진방향**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통합방문지도서비스를 통한 영업자 자율관리능력 향상
- 전문업소 기획점검 및 쇠고기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한 먹을거리 안전 확보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구 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전체업소	7,710	6,221	1,212	277
점검대상	3,507	2,230	1,000	277

-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행정지도업소, 식육 취급업소, 수산물 취급업소 등 (호프, 소주방 등 야간점검대상업소, 다방, 찻집 등 다류전문업소 제외)
- 대상품목 : 16종 (축산물5종, 농산물2종, 수산물9종)

축산물 (5종)	농산물 (2종)	수산물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포함)	쌀,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 점 검 반 : 2인1조 3개반 (공무원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 점검방법 : 테마별 기획점검 및 통합방문지도서비스
 - 테마별 기획점검 : 식육,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대상 전문취급업소
 -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분야 통합방문지도서비스 : 소규모, 영세업소

방문지도 (1차)	자율시정	시정여부 확인 (2차)	미시정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주	공무원	행정처분

- 점검내용 :
 - 업소 내 원산지·식육의 종류 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적합 여부
 -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여부
 - 냉장고, 식재료 보관창고, 수족관 등 원산지 표시여부
 - 도축증명서, 매입거래명세서 등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여부 등

○ 쇠고기 수거·유전자 검사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내산 한우 취급업소 또는 정육식당
- 수거방법 : 한우취급업소별 검체 유상수거 후 한우유전자검사
- 검사결과 조치 : 비한우 판정 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 봄꽃축제 등 행사시 홍보관 운영 (연 4회)
 - 다중이용 역사주변 홍보캠페인 (상하반기 2회)
 -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배부 (각 1회)
 - 구 소식지·홈페이지·지역신문·IP-TV 등에 홍보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교육
 - 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방 법 : 대상자 집합교육 (영업주 8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4회)

□ **소요예산 : 28,645천원** - 구비 22%, 구 기금 78%

공중위생서비스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행정력을 최소화시키고 영업주가 책임감과 준법성을 갖고 자율적인 위생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월 ~ 7월

○ 대 상 : 5개 업종 1,680개소(업종별 월별 점검) (단위: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업 소 수	1,695	259	783	164	232	257
점검시기	-	3월	4월	5월	6월	7월

□ 추진방향

○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점검 생활화로 위생서비스개선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 도모

□ 추진계획

- 1단계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 항목별로 점검 실시 후 구청에 점검표 제출
- 2단계 : 미 참여업소에 대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업소 방문하여 점검 실시
- 3단계 :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 업종별 점검내용

- 숙박업 : 욕실 위생관리, 풍속·청소년·의료법 위반행위, 객실등의 청결상태
- 미용업 :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여부, 점빠기·긱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 등 의료행위 여부
- 이용업 : 이용기구 소독장비 관리상태, 커튼·칸막이등 위법시설물 설치여부 위생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 세탁업 : 세탁용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 여부, 세탁기 사용 중 유기 용제가 누출되지 않는지 여부,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용역업 :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로프, 먼지 측정 장비 보유 여부, 위생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 소요예산 : 710천원 - 구비 100%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목욕장업 욕조수의 수질검사 및 위생처리업 등 제품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방지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4월 ~ 10월
- 대 상 : 3개 업종 196개소(업종별 월별 점검)

□ 추진계획

- 목욕장업 욕조수 수거검사 (목욕장 56개소)
 - 검사회수 : 연2회 (4월, 10월)
 - 검사항목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 목욕장 · 숙박업 먹는 물 수거검사
 - 검사회수 : 연 1회 (목욕장 4월, 숙박업 10월)
 - 검사대상 : 목욕장 56개소, 숙박업 20개소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탁도
- 위생처리업 수거검사 (4개소)
 - 검사회수 : 연2회 (5월, 9월)
 - 검사품목: 물수건 외 3종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검사항목: 물수건, 위생용품 규격기준(외관,이물,대장균,세균수 등)
- 점검반 운영 : 5개 반 11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 검사방법 및 조치
 - 1단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거
 - 2단계 : 보건소 의약과 임상병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3단계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소요예산 : 1,960천원 - 구비 100%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이용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와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향상 유도를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7월 ~ 12월
- 대 상 : 6개 업종 793개소 (단위: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804	259	56	232	257

□ 추진방향

-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 추진계획

- 평가반 운영 : 5개반 11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
- 평가일정
 - 평가안내 : 2014. 7. 1 ~ 7. 10
 - 평가실시 : 2014. 7. 11 ~ 8. 31
 - 등급결정 : 2014. 9. 1 ~ 9. 15
 - 등급통보 : 2014. 9. 16 ~ 12.31
 - 평가결과 등급부여

구 분	등 급	비 고
최 우수 업 소	녹색등급(90점 이상)	우수업소표지판 제공
우 수 업 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수준향상 행정지도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80점 미만)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조치

○ 업종별 평가내용

- 숙박업 : 객실·먹는물 관리,소화기 비치여부,욕실관리,게시현황 등 30개 항목
- 목욕장업 : 발한실관리,게시현황,소화기관리상태,미끄럼방지,조명 등 38개항목
- 세탁업 : 세탁물,유기용제관리,작업대,세탁물 인수증 관리 등 30개 항목
- 위생관리용역업 : 장비 및 교육상태,작업표준,청소용품대장비치 등 28개 항목

○ 평가결과 통보 및 활용

- 결과통보 : 해당업소에 위생등급 통보
- 결과공표 : 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2015. 1.31까지 공표
- 우수 영업소에 로그(게시판) 수여 및 지역언론에 홍보

□ 소요예산 : 9,995천원 - 구비 100%

Ⅲ . 신규·주요 투자사업

연 번	사 업 명	쪽
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실시 대상 알림서비스 추진	26
②	영등포구 “안전之王(식당)” 선정사업	28
③	음식점수족관 원산지스티커 제작·배부	29
④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이용업소 지도점검 강화	30

1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대상 알림서비스 추진 식품위생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기간도래자에 대해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법 위반자 양산 방지
- 기간도래자 문자서비스를 통해 행정청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사업개요

- 식품위생분야 영업허가(신고) 현황
 - 식품위생

구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기타
개소수	8,774	6,221	1,212	198	293	277	573

- 식품안전

구분	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소분업	기타
개소수	3,265	582	613	1,445	115	93	417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 건강진단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현황

- 행정처분 기준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종업원 수가 5명이상인 경우 : 50%미만 30만원, 50%이상 50만원 - 종업원 수가 5명이상인 경우 : 50%미만 30만원, 50%이상 50만원	가산금액 30~50만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 2013년도 건강진단 미 실시 위반 현황

- 위반건수 총232건 중 건강진단 미 실시 위반건수 85건 36.6% 차지

□ **추진방향**

- 건강진단 기간도래자 안내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확인
- 위생분야 종사자가 1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월2회 사전 안내서비스 철저

□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4. 1. 1 ~ 12. 31. (연중)
- 대 상 : 식품위생분야 영업자
- 내 용 : 건강진단 실시 대상 알림서비스 (1년 이내 기간도래자)
- 방 법 :
 - 식품위생분야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 하는 경우에 대해 SMS 알림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 의거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 2013년 10월부터 보건소 위생민원실(3층)에서 인허가(신고) 수리 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받아,
- 서울행정시스템 통합메세지시스템 활용하여 매월 15일, 30일 문자 전송

□ **소요예산 : 비예산**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깨끗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안전식당으로 선정, 영등포의 위생문화수준을 널리 홍보하여 앞서가는 식품위생 문화 창출

□ 사업목표

- 음식점 위생상태 향상 및 클린 안전식당 발굴
-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구정 홍보
- 외식문화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위생 문화 창출

□ 사업개요

- 영등포구 안전지왕 선정반 구성 · 운영
- 영등포구 안전지왕(식당) 선정업소 홍보

□ 추진방향

- 서울시 주관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위생지도서비스』와 연계 시행
- 월150개소 지도서비스 대상업소 중 우수업소 “안전지왕(식당)” 선정
- 안전식당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 추진계획

- 선정대상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66㎡이하인 업소(월150개소)
- 선정주기 : 월 1회(9회 : 3월~11월)
- 선정반 구성원
 - 1차 2인 1조 3개반(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2차 3인 1조 1개반(공무원 2명, 소비자감시원 1명)
- 선정기준
 - 1차 :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점검표 기준점수 이상 업소 선정
 - 2차 : 1차 기준통과 업소에 대한 현장 위생상태 확인
(개인위생상태, 원료보관실 및 조리장 현장사진, 칼과 도마 ATP 측정값)
- 1~2개소 업소선정(단, 기준 미달시 선정업소가 없을 수 있음)
- 선정업소는 각종 홍보 매체(영등포소식지·홈페이지 등) 활용 적극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3 | 음식점 수족관 원산지 표시스티커 제작·배부 원산지관리팀

음식점 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라 수족관 원산지 표시스티커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이용객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환경 제공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수준향상에 기여
-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추진방향

- 수족관 원산지 표시 스티커 제작·배부로 통일된 원산지 표시환경 제공
- 대상업소별 직접 방문·부착으로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업소 최소화

□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3. 1 ~ 5. 30
- 배부대상 : 일반음식점 중 수족관 설치업소

대상업소	수산물 전문업소	뱀장어 전문업소	미꾸라지 전문업소	낙지 전문업소
503	411	35	32	25

- 제작수량 : 1,000개 (규격 : 가로150mm × 세로 210mm)
- 배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대상업소 방문, 배부
- 주요내용
 - 품명(어종) 및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제 홍보문안
 - 구정 슬로건 등

□ 소요예산 : 3,500천원 - 구비 9%, 구 기금 91%

4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이용업소 지도점검 강화 공중위생팀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업소의 불법(퇴폐)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질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이용업소 불법(퇴폐)행위 소지 사전차단으로 시민불편 해소
-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 집중 점검
-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점검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관내 이용업소 164개소

계	당산동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	신길동	양평동	여의도동	영등포동
164	19	36	9	6	38	11	18	27

○ 점검방법

- 1차 : 관내 이용업소 164개소 전수 점검 실시
- 2차 : 1차 점검결과 불법행위 소지업소 집중 점검
- 3차 : 2차 점검결과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사이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여부
 - 이용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여부
- 위생관리기준 등
 - 소독을 한 이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이용기구의 각각 다른 용기 분리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 소독장비 비치여부

□ 소요예산 : 1,600천원 - 구비100%